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0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박균택 · 박지원 · 양부남
김기표 · 이건태 · 황운하
박해철 · 박홍배 · 위성곤
박 정 · 황명선 · 권칠승
김주영 · 박상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읍·면의 장과 마찬가지로 무인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 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국적취득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 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에 한정함(안 법률 제11950호 부칙 제3조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법원서기관”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제18조”를 “제14조, 제14조의3, 제18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중 “귀화허가”를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귀화허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중 “국적회복허가”를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을 “국적회복허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그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

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포함한다),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 청구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미지 전산제적부는 제외한다) 및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에 관한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 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 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 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u>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u> <u>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u> <u>“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u>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 에 관한 특례) ① ----- ----- ----- ----- ----- <u>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u> <u>부이사관, 법원서기관</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 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 조, <u>제14조, 제18조</u> , 제22조, 제 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 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 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 ----- ----- ----- ----- <u>제14조, 제14조의3, 제18조</u> ---- ----- ----- -----.
제23조(신고방법) ① (생 략)	제23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

음)

② -----

-----운전면
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
함한다)-----

-----.

제94조(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
-----귀화허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
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
적을 취득한 사람-----

<신 설>

제3조(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
조제7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호적법」 제1
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대
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
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에 따른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포함한다), 법률 제8435호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
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
람 청구 또는 발급 신청은 본
인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
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미지 전산제적부는 제외하
다) 및 법률 제8435호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

<u>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에 관한 등본·초본 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
--